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 : 추경호 • 태영호 • 김석기

김상훈・윤창현・김용판

홍석준 • 박덕흠 • 정점식

김희국·양금희·이 용

송언석 · 성일종 · 박완수

강대식 • 윤한홍 • 유경준

곽상도·김승수 의위

(20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음.

이에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0년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2월까

지 연장하고자 함. 아울러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승용차를 2020년 3월에서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 4).
- 나.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함(안 제126조의2).
- 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126조의2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2020년 3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 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 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 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 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 1일까지 사용한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 의 80)"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 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 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 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 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 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간 100만원" 을 "연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 간 4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250만원"을 "연간 350 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간 200만원"을 "연간 300만원"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4제1 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 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 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 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 술관사용분
-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 소비세 감면) ①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 2020년 12월 31일까지-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 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세법 | 제3조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 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 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 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 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 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 1. 2. (생략)
-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u>2020년 6월 30</u> 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 자에게 판매할 것
- ③ (생략)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

1.•2. (현행과 같음)
3
20201 - 12.6
<u>2020년 12월 31</u>
<u>일까지</u>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②
<u>.</u>

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 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 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 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 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 우에는 100분의 80)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 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 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 다) × 100분의 40(2020년 3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
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2020년 3

- 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신문· 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3 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가. • 나. (생 략)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u>(2020</u>
	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
	<u>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u>
	<u>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u>
	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
	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
	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가.・나. (현행과 같음)
4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31일 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 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 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 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 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 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 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

	(2020년 3
	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
	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
	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
	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202
	<u>(202</u>
	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
	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
	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
	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0)

6. (생략)

- ③ ~ 9 (생 략)
-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 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 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 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u>80)</u>
6.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1
,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u>연간 15</u>
<u>0만원</u> 을 한도로 한다)
1
연간 4
00만원

-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2
연간 350만원
3
<u>연</u>
간 300만원